

1. 개정이유

우리사주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단주의 의결권 처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,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하여 관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 명시(안 제17조의2)

-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찬성표는 단주를 절사하고, 반대표는 단주를 절상하는 방식으로 그 행사방법을 명시

나.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 추가(안 제17조제2항제4호, 제5호, 제6호 신설)

- 상법에 따른 주식 교환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(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,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)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우리사주 중도인출 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인출이 불가능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은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소수주주로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그 권익이 제한되므로 상법상 예탁주식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사주 중도인출사유에 추가하여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권익을 보호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	한다)가 발생하는 때에는 찬성 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사하고 반대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상 한다.
--	---